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538-32 답 960㎡에 관하여 1993. 6.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지 반복 여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② 시효기간진행 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주점유추정의 반복 여부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175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취득시효)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482-103 대 42.1㎡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6. 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반복 여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 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반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②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피고 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토지 중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 김○○, 김○○은 같은 토지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에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판례]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 47745 전원합의체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623-1 대 817㎡에 관하여 1988. 10.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②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참조판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환지에정지 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

점유자나 그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가 점유 토지를 그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환지에정지 지정이 있기 전의 종전 토지의 점유와 그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 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공업주식회사[123456-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게 ○○시 ○○동 110-5 대 139㎡에 관하여 1982. 12.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

고 하는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4.9. 선고 92다414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피고는, 원고 김일남에게 인천 ○○구 ○○동 36-9 대 1134㎡(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에 대한 1134분의 868.4 지분 중 1134분의 115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김이남에게 위 ○○동 36-5 대 1378㎡(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 한다)에 대한 1334분의 720.4 지분 중 1334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양중욱에게 이 사건 2번 토지에 대한 1334분의 720.4 지분 중 1334분의 60 지분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는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② 주택 부지가 국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주택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

국유토지 상의 주택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지분)

피고는 ○○시 ○○동 579-4 대 380㎡ 중 원고 박○○에게 3/15 지분, 원고 최○○, 최○○, 최○○, 최○○, 최○○에게 각 2/15 지분에 관하여 1990. 10.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 27805 판결)

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 · 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반소) 청구

[본 소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764-1 임야 2,046㎡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44,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286㎡의 별지 지분목록 기재 피고 및 선정자들 지분에 관하여 1991. 7.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 분묘굴이 및 상석철거등]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경남 ○○군 ○○면 ○○리 764-1 임야 2,04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6, 3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분묘의 기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44,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에서 별지 제1도면 표시 36, 37, 38, 1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②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취득시효, 동시이행)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3. 6.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①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수원지법 1999.7.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리 167 대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02㎡에 관하여 1980. 4.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바로 국유로 귀속되는지 여부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인바,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

③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매년 받아온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과 부지를 함께 매매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고, 주택만을 매도하고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면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받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의 부지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그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42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등기말소,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군 ○○면 ○○리 산 53 임야 14,082㎡(임야대장상 지적 14,182㎡,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8. 21. 접수 제814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6. 1.1. 또는 1982.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필지의 임야가 갑, 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쳐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및 경정 전후 두 토지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적경정등기의 효력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류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 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정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피고는 원고에게, ○○ ○○군 ○○면 ○○리 121-2 대 1,891㎡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3, 12, 11, 10, 6, 5,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9㎡에 관하여 1991. 5.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②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반복 여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61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시효취득)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57 대 545㎡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7, 8, 3, 9, 18, 19, 20, 21, 22, 23, 27, 28, 2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7㎡, 같은 동 153-5 대 281㎡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 같은 동 158-1 전 1,620㎡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7, 19,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배○○에게 ○○시 ○○동 157 대 545㎡ 중 위 357㎡, 같은 동 153-5 대 281㎡ 중 위 22㎡, 같은 동 158-1 전 1,620㎡ 중 위 9㎡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57 대 545㎡ 중 위 357㎡, 같은 동 153-5 대 281㎡ 중 위 22㎡, 같은 동 158-1 전 1,620㎡ 중 위 9㎡에 관하여 1989. 5.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2. 토지에 관하여 1992. 3.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기재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35㎡에 관하여 1992. 3.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도중 국가가 소제기자에게 대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

② 하천법상 제외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한다.

③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잡종재산 입증책임 유무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1785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1. 피고 한강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경북 ○○군 ○○면 ○○리 834 대 509㎡ 중 원고 박○○, 김○○에게 각 17분의 6, 원고 박○○에게 17분의 4, 원고 박○○이에게 17분의 1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1. 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일남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같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9. 6. 28. 접수 제22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9. 11. 14. 접수 제1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김일남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위 지분비율에 따라 1983. 1. 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건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를 유효라 할 것이다.

④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취득시효)

1. (가) 피고 이봉팔은 피고 조병일에게 서울 ○○구 ○○동 236-1 대 40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25, 23, 24,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㉔ 부분 109㎡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0. 12. 26. 접수 제 51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조병일은 원고들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4. 9.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6090 판결)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소유권일부이전)

선택적으로, 피고는 전남 ○○군 ○○읍 ○○리 산 9-6 임야 8,404㎡ 중, 원고 김○○에게 별지 (1) 도면 표시 ㄴ 2, ㄴ 4, ㄴ 4, ㄴ 4, ㄴ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1,325㎡의 6/7지분에 관하여는 1980. 3. 17, 같은 도면 표시 ㄴ 5, ㄴ 5, ㄴ 5, ㄴ 6, ㄴ 6, ㄴ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차)부분 1,121㎡의 6/7지분에 관하여는 1989. 8. 1, 원고 고○○에게 같은 도면 표시 ㄴ 5, ㄴ 6, ㄴ 6, ㄴ 6, ㄴ 6, ㄴ 6, ㄴ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카) 부분 2,145㎡의 6/7지분에 관하여 1981. 6. 13, 원고 양○○에게 같은 도면 표시 ㄴ 6, ㄴ 6, ㄴ 6, ㄴ 6, ㄴ 6, ㄴ 8, ㄴ 8, ㄴ 8, ㄴ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파)부분 1,741㎡의 6/7지분에 관하여 1987. 3. 15, 원고 김○○에게 같은 도면 표시 ㄴ 7, ㄴ 8, ㄴ 8, ㄴ 8, ㄴ 8, ㄴ 8, ㄴ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하)부분 1,970㎡의 6/7지분에 관하여 1989. 1. 19, 원고 양○○에게 같은 도면 표시 ㄴ 5, ㄴ 5, ㄴ 5, ㄴ 5, ㄴ 5, ㄴ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자)부분 1,841㎡의 6/7지분에 관하여 1989. 8. 15. 원고 이○○에게 같은 도면 표시 ㄴ 2, ㄴ 5, ㄴ 4, ㄴ 4, ㄴ 4, ㄴ 4, ㄴ 5, ㄴ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타)부분 2,887㎡의 6/7지분에 관하여 1986. 1. 1, 원고 김○○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ㄴ 1, ㄴ 3, ㄴ 3, ㄴ 3, ㄴ 3, ㄴ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2,057㎡의 6/7지분에 관하여 1987. 12. 8. 원고 한○○에게 같은 리 산 9-1 임야 5,741㎡ 중 별지(1) 도면 표시 ㄴ, ㄴ, ㄴ, ㄴ, ㄴ,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70㎡의 6/7지분에 관하여 1986. 4.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1990. 10.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

[참조판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점유자가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취득시효 완성, 매매를 원인으로)

1. 주위적 청구취지

○○시 ○○면 ○○리 산 123 임야 47,504㎡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합계 25,404㎡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남필우에게 6/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남필승에게 4/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남일순, 남이순에게 각 1/14지분에 관하여 1996.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시 ○○면 ○○리 산 123 임야 47,504㎡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4㎡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남필우에게 6/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남필승에게 4/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남일순, 남이순에게 각 1/14지분에 관하여 1945.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에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점유시효취득 대상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440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경남 ○○읍 ○○동 1127-2 대 9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1㎡와 위와 같은 동 1127-3 대 15㎡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조일남, 김을순에게 그 각 소유권지분 6/18에 대한, 원고 조이남에게 그 소유권지분 4/18에 대한, 원고 조일순, 조이순에게 그 각 소유권지분 1/18에 대한 1974. 6. 1.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0.6.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선택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170-13 체육용지 570㎡에 관하여 1989. 11. 15. 또는 같은 해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공1999상, 299)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유권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9 .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2) (3)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7.9. 선고 98다29575 판결)

[참조판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판례]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였으나 그 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 거부
취득시효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효완성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3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경남 ○○군 ○○읍 ○○리 160-1 대 58㎡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 105㎡에 관하여, 피고 강일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8. 8. 20. 접수 제138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강일남은 1981. 3.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66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463-18 대 227.7㎡ 중 별지도면 표시 10, 56, 73,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25.6㎡ 및 같은 동 463-21 대 302.5㎡에 관하여 각 1987. 11.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부당이득반환, 동업계약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2가 302-8 잡종지 225.8㎡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동업계약해지 또는 1997. 12. 9.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은행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8. 11. 접수 제1119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일자미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64 전 734㎡에 관하여 1948. 일자미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는지 여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공2000하, 1614)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23-1 임야 1,179㎡에 관하여 1984.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23-1 임야 1,179㎡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11. 접수 제14081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이므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4266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서울 ○○구 ○○동 산 1-2 입야 3,000㎡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최○○, 같은 김○○에게는 각 13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김○○에게는 13분의 7지분에 관하여, 같은 김○○, 김○○, 김○○에게는 각 13분의 8지분에 관하여 199 .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미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함된다.

②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1966. 1. 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8619)

[참조판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전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454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중 피고 김○태는 6/27, 피고 김○매, 김○해, 김○환은 각 1/27, 피고 김○의, 김○민, 김○운, 김○연은 각 4/27, 피고 김○우는 2/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기는 같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1965.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참조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에게 105분의 66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105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1976. 11.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후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 기간 중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시효기간의 기산점(=점유 개시시) 및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

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군 ○○면 ○○리 123 답 7,820㎡ 중 별지 도면 표시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93㎡{이하, 위 (가)부분 토지라 함}에 관하여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972. 9.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부분 토지 중 85분의 6지분에 관하여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982.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85분의 7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7. 2. 26. 접수 제16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③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649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선택적 병합, 취득시효, 이관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1990. 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또는 1970. 1. 29.(또는 1977. 12. 29.)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②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 위 시설들이 자연공물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공물이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를 수리조합이 그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에는 이들 시설들을 자연공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목적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일반공중의 공동이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공1999상, 629)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 (1) 선정자 안○만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2) 선정자 조○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3) 선정자 김○복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4) 선정자 김○염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2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5) 선정자 정○호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관하여 1990. 4.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6) 선정자 박○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7) 선정자 우○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8) 선정자 김○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8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9) 선정자 김○옥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9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0) 선정자 고○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0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1) 선정자 이○수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1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2) 선정자 이○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2부동산에 관하여 1992. 7. 2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3) 선정자 장○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3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4) 선정자 김○중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4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5) 선정자 최○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5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6) 선정자 이○원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6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7) 선정자 김○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7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8) 선정자 홍○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8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9) 선정자 김○배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9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0) 선정자 강○봉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20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1) 선정자 윤○중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21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 서울 ○○구 ○○동 산 40-1 임야 18,621㎡ 중,

- (1) 원고 이○○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1㎡에 대하여 1989.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원고 김○○에게 별지 도면 표시 4, 3, 6,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4㎡에 대하여 198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3) 원고 박○○에게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에 대하여 1992. 2.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4) 원고 정○○에게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에 대하여 1987. 12.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5) 원고 조○○에게 별지 도면 표시 36, 43, 44, 45, 46, 47, 37,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8㎡, 별지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9㎡ 및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7㎡에 대하여 각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6) 원고 박○○에게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347㎡에 대하여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7) 원고 이○○에게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378㎡에 대하여 1989. 5.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원고 조○○에게 서울 ○○구 ○○동 91-7 대 1,263㎡에 대하여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다. 원고 박○○선임에게 서울 ○○구 ○○동 91-8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40, 39, 58, 59, 60, 61, 67, 66, 65,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479㎡에 대하여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한봉팔은 원고들에게 서울 ○○구 ○○동 산 40-1 임야 18,621㎡에 대한 90/6,36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2. 18. 접수 제6906호로써 마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부분 추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참조판례]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점유자 갑이 그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뒤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갑의 권리구제 방법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며 그 후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유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고, 나중에 가처분채권 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②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할 수 없다.
- ③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믿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각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